

토론회 자료집

# SOFA 개정안, 국회는 왜 비준을 거부해야 하나?

- ◆ 일시 : 2001년 2월 8일(목) 오후 2시~4시
-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 주최 :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719-8946)  
국회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784-2376)

토론회 자료집

# SOFA 개정안, 국회는 왜 비준을 거부해야 하나?

- ◆ 일시 : 2001년 2월 8일(목) 오후 2시~4시
-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 주최 :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719-8946)  
국회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784-2376)

# SOFA 개정안, 국회는 왜 비준을 거부해야 하나?

## —행사 순서—

사회 : 김용한 (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인사 : 홍근수(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민족화해지구통일협의회 상임의장)
- 격려말씀 : 김원웅 국회의원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 발제요지 : 우리는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개정 SOFA 비준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나?—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용한(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1 : 형사재판권/시설·구역  
: 이장희(외대 법학과 교수,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 발제 2 : 여성과 어린이 인권  
: 이김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 발제 3 : 환경  
: 이현철(녹색연합 공익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 발제 4 : 노무  
: 이소희(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사무차장)
- 발제 5 : 민사청구권  
: 이정희(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SOFA 개정안, 국회는 왜 비준을 거부해야 하나?

## —자료집 순서—

- 4쪽 / SOFA 개정안 비준을 거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 6쪽 / 발제 1 : 개정SOFA(2001)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구역’에 대한 평가  
: 이장희(외대 법학과 교수, 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 14쪽 / 발제 2 : 소파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여성의 관점에서—  
: 이김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 18쪽 / 발제 3 : 개정된 소파의 문제—환경조항을 중심으로—  
: 이현철(녹색연합 공익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 29쪽 / 발제 4 : 개정 노무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이소희(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사무차장)
- 46쪽 / 발제 5 :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 이정희(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53쪽 / 성명서 : 소파협상 다시 하라!

# SOFA 개정안 비준을 거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SOFA 개정에 몸을 던져 싸워 온 우리는 지난 해 SOFA 개정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신 모든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국회의원님 여러분께서 비준 거부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주요 요지'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이 교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째, 오히려 더 나빠진 부분도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덧붙이는 자료집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는 외교통상부에 '정부 대표와 시민 사회 단체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정식 비준 이전에는 응할 수 없으며, 비준 이후에는 TV 토론회를 하자고 역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때라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일단 약속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연구와 검토를 거친 끝에 외교통상부와 갖는 토론회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문제점을 짚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자료집>에 실린 것과 같은 상당한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SOFA 본 협정 31조와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가운데, 이번에 고친 부분은 겨우 형사관할권, SOFA 적용 대상, 환경, 노무, 동·식물 검역,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 비세출자금기관, 민사 소송 절차 같은 8가지 분야에서도 극히 일부였습니다.

이번에 나아진 부분은 대부분 선언적일 뿐입니다. 그나마 몇 십 년 전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기 시작할 때부터 당연히 그렇게 규정해 놓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것도 갖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놓아서 실현 가능성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손도 대지 않은 문제나, 오히려 개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밖에는 따질 기관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미군 피의자를 기소한 뒤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신문할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형 집행에 관하여 미국 군 당국이 특별히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형 집행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되는데, '견해 표명'에 영향을 입게 해 놓은 것입니다.

시설·구역 조항에서도 한국은 '공여지 침해 방지'라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주 스토리 사격장 문제 때문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명문화한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이 조항 때문에 한미 두 나라 정부와 지주들 사이에 가장 많은 마찰을 빚을 것입니다.

개정 SOFA 본 협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되,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1991년 개정 양해사항 제26조에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한 것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비준 거부'입니다.

현재의 한미 관계나 정치 구조상 비준 거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는 안 됩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비준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자유로운 토론과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될 경우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이번 SOFA 개정안이 최선의 것으로 착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식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SOFA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따져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2001년 2월 15일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 개정 SOFA(2001)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구역'에 대한 평가

이장희  
한국외대교수/국제법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 I. 문제제기

1996년 11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5년 간 끌어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 SOFA)이 지난 2000년 12월 28일 제11차 협상에서 전격 타결됐다. 이렇게 제11차 협상까지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내 부분적 합의를 유도한 것은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을 포함한 수많은 시민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번 SOFA 개정은 각 영역에서 "일단" 부분적 개선은 됐으나, 시민단체가 주장했고 기대했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어떤 부분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된 부분도 보인다. 그 이유는 가장 문제 많은 합의의사록의 독소조항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데 있다. 이번 SOFA개정부분은 형사관할권, SOFA 적용대상, 환경, 노무, 동·식물 검역,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 비세출자금기관, 민사소송절차, 등의 8가지 분야였다. 여기서는 주로 '형사관할권'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II. 형사관할권

첫째, 형사관할권의 신병인도시기를 현행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시 신병인도로 앞당긴 것은 개선점이다.(SOFA 본 협정 제22조 제5항/다 참조) 그러나 12개 범죄<sup>1)</sup>

1) 12개 범죄: 살인, 강간(준강간 및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 석방대가금 취득목적의 약취·유인, 불법마약거래, 유통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방화, 흉기강도, 위의 범죄의 미

에 한정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재판종결후 신병인도로 하였다. 또 이러한 기소 시 구금에는 조건이 붙는다. 즉,

- 1)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 2) 기소 시나 기소 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 일 것
- 3)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12개 유형의 범죄일 것
- 4)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을 것

여기서 "상당한 이유(adequate cause)"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하며, 이러한 사법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구금의 "필요(Necessity)"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또는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 잠재적 증인, 또는 그들의 가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를 이유로 피의자의 구금이 요구되는 사법적 결정을 말하고, 이 결정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일 SOFA(제 17조 5항)와 NATO SOFA(제 7조 5항)에서는 이러한 기소 시 구금에 이러한 제한규정이 전혀 없는데 비하면 매우 미흡하다.

둘째, 범행 현장이나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 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혹은 죄질이 나쁜 강간을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한국측이 체포하였을 경우에, 미국 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다.( SOFA 제22조 제5항/다 합의의사록 참조)

단지 여기에는 까다로운 4가지 전제조건이 붙는다.

- 1) 현행범일 것
- 2)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3)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피해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를 구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 4)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을 것.

위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국측의 계속구금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수,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교통사고로 사망초래후 도주, 위의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개정 SOFA 제 22조 5항 /다 합의의사록 3호)

여기서 “살인”은 모든 살인을 포함하는 지, “죄질이 나쁜 강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향후 매우 논란이 될 수 있다. 개정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유형의 사건은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합동위원회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양국정부가 사건별로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법 개념의 근본적 차이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예로 좋은 강간은 허용된다는 말로서 한국 법 논리상 허용될 수 없다. 또 구금의 필요성은 누가 판단하는지,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없거나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피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금할 수 없는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셋째, 한국이 신병인도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계속구금권을 받아 내는 대신에 미군피의자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를 지나치게 허용하였다. 양해사항의 추가내용은 대부분이 재판 전 피의자의 권리 보호 규정만을 지나칠 정도로 규정하였다:

1) 대한민국 법령상 허용되는 모든 경우, 피의자의 체포·구금, 또는 체포·구금을 위한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에 의해 그리고 피의자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신청되고 개최된다.

2) 보석신청권과 법원에 의한 보석심사를 받을 권리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 그의 변호인 또는 그의 가족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지속적 권리이다.

3) 질병, 부상, 임신 등 특별한 경우 미군이 재판 전 구금의 포기 또는 연기를 요청하면 한국은 이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없는 것으로 지나친 인도적 사유이다. 자칫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적 사유에 의한 특별 요청은 긍정하나, 한국 형법에 따라 하면 족한데 왜 미국피의자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하고 인도적 대우를 하는지 의문이며, 이것은 내외국인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

4) 기소 후 대한민국 당국의 신문을 못하게 하였다. 대한민국 당국은 기소 후 그 구금 하에 피고인을 상대로, 기소된 범죄 사실 또는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기소될 수 있었던 범죄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 상황 또는 사건에 관하여 신문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명백한 한국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5) 한국은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형 집행에 관하여 미국 군 당국이 특별히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한다. 형 집행은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되는데, 한국법률이 미국당국의 단순한 견해표명에 영향을 입어서는 안 된다.

6) 변호인의 조력은 이 협정과 한국 법령 중 보다 유리한 범위 내에서 존중된다. 당연한 규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7) 체포 후 계속구금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변호사와 합중국대표가 출두시까지 불심문

변호인이 선임되어 합중국 대표와 함께 예비조사에 참여 할 때까지 피의자의 신분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의 신문을 하지 못한다. 특히 이 경우 대한민국법 상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변호인 참여가 가능 할 까지 정지된다. 이는 명백하게 한국 형사소송법의 배제이다.

8) 범행 증거 확보는 기소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도 한국형사소송법에 명백한 위배되면, 한국사법주권의 침해이자 한국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이다.

9) 대한민국 당국은 변호사 부재 시 취득한 증언,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불사용을 보증한다. 이것은 이미 현행 SOFA에 있는 규정으로서, 그것을 명확화 한 것은 좋으나, 한국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10) 수사 및 재판 절차를 포함하여 특히 현장검증 과정에서 피의자의 프라이버시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 당연한 것을 왜 다시 명문화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한국 사법 당국에 대한 불신이다.

11) 한국은 재판 전 구금 또는 구속의 시설이 합동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사전 승인될 것을 보장한다.

1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합중국의 적절한 대표, 변호인 및 가족과의 통상적인 연락 및 접견이 허용된다.

13) 대한민국은 미군피의자에게 가족 접견 횟수와 시간에 관한 특별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한국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14) 변호인은 정상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여,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동안 비밀리에 상의 할 권리를 가진다.

15)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절차를 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최초 구금 후 30일 이내에 기소나 석방, 1심 재판은 구금 후 6개월 내에 재판 결정이나 석방, 항소심은 1심 재판 후 4개월 이내에, 상고심은 항소심 후 4월 이내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된다.

넷째, 미군과 군속의 대물 교통사고 중 공무수행중이거나 \$25,000 이상(한화 약 2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 불입건이 되며, 단지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200만원 이상의 대물교통사고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있는 반면, 미군은 예외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당국은 일본 독일 등 대부분국가들이 불입건 원칙을 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미군범죄의 70%이상이 교통사범이기 때문에

이것에 재판관할권을 미군측에 넘기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교통상황과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처사이다. 이것은 현행 SOFA의 개악이며,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의 위반이다.

형사관할권개정을 요약하면, 현행 SOFA는 피의자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겨주고 살인과 강간의 경우에 현행범인 경우 계속구금권 인정을 하는 대신에 미군 피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해 주는 양보를 하였다. 이번 개정SOFA는 부분적으로 개선점은 있으나 한국의 형사사법주권을 기존의 SOFA 보다도 더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더구나 미군피의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검사가 항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든지, 포괄적으로 미국위신에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변호사도 아닌 단순 미군관리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반드시 참여시키는 문제, 형사관할권행사의 핵심인 공무 증명서의 발급문제와 형 집행 상 합동위가 정하는 시설과 수용자대우에 대한 최소한도의 수준 충족(합의의사록 제 22조 9항)의 문제점 등 여타 수많은 독소규정 등은 전혀 손을 대지 않으면서, 개정안은 미국 쪽의 가석방 요청이나 인권 보호(영미법 범문화강변)에 지나칠 정도의 특혜를 부여하는 등 두터운 보호막을 쳤다.

### III. 시설·구역의 공여, 관리 및 반환

개정의 취지는 공여지의 무단 용도변경 등 불합리한 공여지 관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방지하고, 미사용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 양측 합의를 통한 공여지 용도 변경, 공여지 내에 시설 건축시 사전 협의 등 시설·구역의 운영과 관련한 절차 보완의 필요성에 연유한다.

개정내용을 볼 때, 첫째로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공여당시 최초의 취득문서에 명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용계획상”** (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SOFA 제2조에 따라 공여된 모든 토지와 시설 및 구역을 매회 1회 이상 검토한다.

여기서 종래 보다 다른 개선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 및 구역(불용토지)에 대해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공여당시 최초의 취득문서에 명시된 용도상 또는 장래의 사용계획상”**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명백히 한 점이다. 다시 말해 반환 대상이 되는 불용 토지란 취득문서용도와 장래 사용계획과 상치되는 토지라고 구체화 해 볼 수 있다. (양해사항 제2조 3항 1호)

둘째로 미국 측은 용도 변경된 시설과 구역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에 통보와 협의 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양해사항 제2조 3항 2호)

셋째로 SOFA 합동위 산하 시설 분과위가 사용되지 않으면서 반환되지 않은 공여지에 대해 합동실사를 할 수 있는 절차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해사항 제2조 3항 3호)

넷째로 미군 시설 건축 시 한국측과 협의한다. 미측이 군부대내에 건축을 신개축할 할 경우 한국측에 사전 통보 및 협의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 미측의 무단토지이용을 차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해사항 제 3조 1항)

그 대신에 한국측은 공여지 침해방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미군훈련장 등 시설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등 공여지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미국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측은 행정적 지원조치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현행 SOFA의 시설과 구역 조항에서 공여와 관리 그리고 반환이 형식적으로 양국이 합의해서 정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 측에 의해 정해지거나 아니면 비공개 합의위원회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한 예로 미군 부대 내에 미국 측의 위험한 무기반입(핵무기 및 열화 우라늄 탄)이나, 군사작전대해서는 전혀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나 통고 규정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유효기간도 무제한이다. 이번 개정 SOFA에서는 너무 표피적인 것만 다루고 시설 및 구역에 대한 근본 정책에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시설 및 구역의 효력 기간 및 임대료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러한 미약한 개정으로는 매항리 문제와 같은 재발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그런데 미일 협정이나 미·필리핀 협정, 미 독일 협정은 위험한 무기 반입 시나 군사작전 시에 반드시 접수국과 사전 협의나 통고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미·필리핀 협정은 25년마다 시설 및 구역을 1년 전 통고로 종료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검토하였고, 또 미국 측은 명분상은 군사원조라 하지만 사실상 임대료를 지불하였다. 일본과 필리핀 협정 모두 시설과 기지 주변에까지 보안조치권을 한미행정 협정처럼 지나치게 확대·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개정 SOFA의 시설과 구역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SOFA 본 협정문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단지 여론의 표적이 되는 현상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 양해사항을 추가한데 불과하다. 그래서 영토주권의 관점에서 시설과 구역의 공여, 관리, 반환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닌 본 협정 제2조, 제3조, 제4조는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 IV. 전체적 평가

개정 SOFA를 형식상으로 분석해 볼 때, SOFA 본 협정은 단지 총론적 규정 하나만(제 22조 형사관할권) 개정하였고, 합의의사록은 4개 조항, 양해사항은 10개 조

항,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노무에 대한 양해각서, 합동위원회의 합의 사항, 비세출자금기관 회의록에 손을 대었다. 문제 많은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보다는 주로 양해사항에 개정을 하였고, 예민한 부분은 법 규범성이 약한 양해각서로 처리하였고, 비세출자금기관은 회의록 형태로 미해결로 남겨 두었다. [표 1: 개정 SOFA의 구성] 참조

내용상 평가해볼 때, 이번 SOFA는 몇 가지 개선된 부분은 있다. 그러나 미국이 몇 가지 개정을 하면서 한국이 미군 측에 지나친 양보를 해버렸고, 그 동안 SOFA에서 가장 문제된 독소조항의 삭제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첫째 원칙적인 합의를 하면서 항상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부쳤다. 이 전제조건을 악용할 경우 원칙적 합의가 무산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둘째, 미국 측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한국에게 지나친 양보를 요구했다. 그 예로 형사피의자 신병인도시기를 현행 확정 판결에서 기소시점으로 양보하는 대신 미군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지나치게 양보, 명문화하였다.

셋째, 현행 SOFA의 가장 문제가 많은 합의의사록의 문제점을 거의 개정하지 않았다.

넷째, 시민단체가 요구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정 수준에는 매우 미흡하다. 예를 들어 불평등성을 지닌 SOFA의 모범인 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다섯째, 개정수준이 독일보충협정, 미일 협정, NATO협정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여섯째, 본 협정 제 5조 1항(주한미군주둔 경비의 미군분담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1991년]의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도 하지 않았다.

일곱째, 개정 SOFA 본 협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되,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1991년 개정 양해 사항 제 26조에서 한국어본과 영어본은 정본이되, 해석 또는 이행에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보다 후퇴하였다.

그래서 금번 한-미 SOFA는 한미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남북 정상회담 후 괄목할 만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여 볼 때, 시민단체가 요구한 상호성, 주체성, 평등성, 주권 회복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조 : 개정 SOFA의 구성

(필자가 외교통상부의 공식 개정 SOFA(2001)를 분석 정리한 것임)

1. 협정 본문 개정 : 1) 제22조 5항(다) : 형사관할권  
2) 발효조항
2. 합의 의사록 개정 : 1) 제3조 : 시설과 구역  
2) 제17조 : 노무  
3) 제22조 : 형사관할권  
4) 제25조 : 보안조치(미국의 설비, 비품, 재산, 공무상의 정보)
3. 양해사항 개정: 1) 제2조 제1항(나), 제3항 /시설과 구역의 반환  
2) 제3조 제1항, 시설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통고 및 협의  
3) 제9조 5항,6항 공동 검역  
4) 제13조 : 비세출자금기관  
5) 제15조 : 초청계약자  
6) 제16조 : 주한미군의 계약활동  
7) 제17조 : 노무  
8) 제22조 : 형사관할권  
9) 제23조 : 민사청구권  
10) 제26조 : 2항 /합동검역
4.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 합의 의사록 제3조 제2항에 근거,  
1)환경관리기준  
2)정보공유 및 출입  
3)환경이행실적  
4)환경협의
5.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 고용 및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6.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7. 비세출자금기관 회의록



# 소파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의 관점에서—

이길현속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 I. 여성 인권 보호 조항의 부재

윤금이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미군의 잔혹한 범죄를 목도해 온 여성계는 소파 개정 운동을 통해 여성 인권 보호 조항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SOFA는 여성들의 이런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미군의 존재는 한국 사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그 중에서도 여성은 미군의 주둔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첫째로, 여성들은 무차별적으로 미군의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고,

둘째로, 미군은 기지촌여성을 양산해 냈다.

셋째로, 미군은 이 땅에 적지 않은 혼혈아를 생산했으나 모든 양육 책임을 가난한 기지촌 여성에게 전가한 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한국여성과 혼혈아를 인권사각지대에 내몰았다.

넷째로, 여성들은 매항리 주민들의 고통에서 보듯이 미군기지과 미군의 군사활동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의해 모성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이 같은 반인권적 행위는 적절하게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는 미군과 한국정부로부터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성들의 체험이다. 물론 불평등하게 체결된 SOFA 때문이다.

미군은 한국에서 군사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의 실체다. 이렇게 강대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그들의 특권을 보장한 SOFA의

보호 아래 국가적, 인종적, 성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누려 왔다. 이들의 우월한 지위와 우월감은 여성에 대한 미군 범죄를 구성하는 한 요인이다. 힘의 논리와 남성 우월감을 극대화시키는 군사주의, 강도 높은 군사 훈련과 병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주둔국 여성에 대한 미군 범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다. 미군의 군사훈련에서 성적 욕구의 해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가정되고 있으며 이런 숨은 가정은 타민족의 여성이나 취약 계층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폐해를 결과한다. 마치 군사 기지가 전함과 전투기의 재충전과 수리의 장소이듯이 기지촌이 미군들을 '재충전'시키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다. 한국 여성에 대한 미군의 성범죄는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와 가부장적 군사주의의 폐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SOFA에는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이 통합되어야 하고 아래와 같이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1)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1) 미군과 그 군속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과 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2) 주둔 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을 금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범죄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양국의 처벌조항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하고 피해자 배상에서도 양국의 배상관례 중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3)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일 경우, 전담 여성수사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권리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 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시한다.

2)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설해야 한다.

(1)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미군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性病/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2) 기지 반환 및 접수시 기지 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 아동 지원 대책을 포함시킨다.

(3) 미군을 대상으로 매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매춘 금지를 명문화한다.

3) 미군의 주둔국 배치 직전과 직후에 주둔 지역의 관습과 법(특히 성폭력 특별법), 남녀 관계(gender relation), 지역 정서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4)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모성 보호 조항을 두듯이 환경 조항에도 환경 공해로부터 특별한 영향을 받는 모성 보호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1) 미군 주둔과 군사 훈련으로 인한 모성 및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 미군 주둔과 작전 수행에 따른 제반 환경 오염 정도와 이것이 모성 및 주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 당국의 배상 의무, 오염 정화 및 원상 회복 책임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

## II. 혼혈아 인권 보호 조항의 부재

이번 개정안은 혼혈아들의 인권 보호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다. 현재 한국에 5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혼혈 아동은 혼혈아이자 매춘 여성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을 받고 있으며, 편견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고용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혼혈아가 소수이고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지라도 소수자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아버지 나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혼혈아들에 대한 보호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1) 혼혈 아동의 친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미군이 친부임이 확인된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 훈련, 미국 입국시의 지원책도 규정되어야 한다.

2) 입법례로서 미-독 협정(The US-German Agreement)과 교환 각서(Exchange of Notes)에 있는 '부양 요구(maintenance claim),(1956. 4.18-1959. 8. 3)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 III. SOFA 개정안에 있는 '죄질이 나쁜(egregious) 강간'의 문제

이번 SOFA 개정안은 한국측이 미군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계속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범행 현장이나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 직후나 합중국 통제 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혹은 죄질이 나쁜 강간을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한국측이 체포하였을 경우에, 미국 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다.(SOFA 제22조 제5항/다 합의의사록 참조)”

단지 여기에는 까다로운 4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다.

1) 현행범 일 것

2)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증거 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피해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를 구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4)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을 것

위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국측의 계속구금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죄질이 나쁜 강간”의 의미가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듣는 이들은 강간에도 좋고 나쁜 강간이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이것을 SOFA 개정 협상 결과 분야별 해설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강간을 ‘죄질이 나쁜 강간’으로 규정한 것은, 미국의 경우 강간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폭력과 위협을 사용한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양국 간 이러한 개념 차이를 고려하여 향후 합동위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마련할 예정”

강간을 ‘죄질이 나쁜’ 강간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강간을 <체포 시 계속구금권>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이는 여성을 그만큼 더 큰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또한 죄질이 나쁜 강간을 누가 판단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게 될 것이며 이는 그만큼 여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크게 열어 놓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군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더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강간죄의 경우 한미 양국 간의 법 체계 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유리한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개정된 SOFA의 문제 —환경조항을 중심으로—

이현철

녹색연합 공익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 1. 들어가며

2000년 12월 28일 한국의 모든 언론들은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이 개정되었다며 대서 특필하였다. 특히 모든 중앙 언론은 사실을 통하여 '이번 SOFA 개정이 미흡하지만 성과가 있으며, 일본 SOFA보다는 진일보하며 독일 SOFA에 비하여 낮은 단계의 협정'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한겨레의 경우 '우리 쪽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는 이번 개정이 6년만의 타결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미 관계가 보다 성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세계일보의 경우 이번 개정을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마치 이번 협상으로 한국 국민을 미군으로부터 역 차별하는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흐름은 진보적이라는 한겨레에서부터 미군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온 조선일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같다.

그렇다면 이번 SOFA 개정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한 것인가? 정부의 주장과 언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미군에 의한 환경 범죄와 인권 유린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SOFA의 문제점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그 동안 한국 국민을 미군으로부터 역 차별해 오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이다.

현실적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역 차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히 불평등한 것이며 바뀐 것이 없는 것이다.

## 2. 환경조항에 대한 이해

이번 개정에서 환경 조항이 SOFA 합의 의사록과 특별 양해각서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이번 환경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3조의 합의의사록 제2항에 부합하여, 1953년의 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그리고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 사회에서의 오염의 방지를 포함하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그들의 정책에 부합하게 환경 관리 기준, 정보 공유 및 출입, 환경 이행 실적 및 환경 협의에 관하여 아래 '양해 사항1. 들어가며'에 합의하였다.

###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 관리 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 관리 기준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 관리 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토 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 관리 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 정보 공유 및 출입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 위원회의 체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환경 분과 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상호방위조약 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 활동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한다. 환경 분과 위원회는 정보 교환을 위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 실사·모니터링 및 사고 후속 조치의 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 환경 이행 실적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 사회에서 환경 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서도 논의한다.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 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 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 환경 협의

합동위원회의 환경 분과 위원회와 다른 관련 분과 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환경 문제와 그와 같은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 사회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 위원회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위의 양해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다.

### 3. 개정된 환경 조항의 문제점

이 내용은

- 한미 방위 활동 관련,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상호 인정하며,
- 미측은 한국의 환경 법을 존중하고 우리는 미군의 안전을 적절히 고려한다.

- 미군 환경 관리지침을 매 2년마다 또는 수시로 검토 보완한다.
  - 환경 관련 정보 교류와 관련자 미군기지 출입 절차를 마련한다.
  - 환경 관리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오염을 제거하며, 우리는 미군에 영향을 미치는 기지 외부의 오염에 적절히 조치한다'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러한 부속 문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동안 민간 단체가 주장해온
-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한국 관련법에 따른 처벌
  - 오염의 완전 정화와 정화 비용 오염자 부담
  - 한국측의 예측 가능한 환경 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권 및 오염 발생 이후 감독권' 등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미군의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방법이 없이 기존에 미군이 해오던 행정적 행위에 대한 문서화라는 의미밖에 없다.

과거 92년 미군은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압력에 의하여 미국 국무성에 의해서 해외 환경 지침서가 발표되었다. 이 미 국방성 해외 환경 지침서(Department of Defence 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Document-OEBDG : 1992 . 미국무성)는 19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97년 주한미군은 한국의 많은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주한미군 환경 기준 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한국의 많은 시민 단체에 의하여 강제되었으나 실제 그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군의 행정적인 환경 관련 행위는 미군이 2년에 한번 시설에 대한 환경 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환경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기초 자치 단체 관련 공무원에게 즉각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998년 3월 7일 백운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에 미군 측은 늦게나마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 그럼에도 백운산은 여전히 기름 냄새가 진동하며 오염된 토양이 복원되지도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식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그 동안 일정하게 행해져 오던 행위를 문서화시켰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된 SOFA의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환경 복원에 대한 의무 조항의 경우를 보면 SOFA에 의하여 합의의사록의 그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SOFA의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항에는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된 합의의사록과 양해각서로는 이 조항을 대항 할 수 없으며 또한 미군이 고의적으로 파괴한 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우리는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미군이 시설과 구역 내에서 행하는 계량 및 건축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미군 철수 이후 보상을 할 의무가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호적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국토를 무상으로 미군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양도된 국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불법적인 미군 시설에 대한 보상 책임과 상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으로 참으로 비통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번 협상 당사자인 외교통상부가 원상 회복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환경 오염 방지 및 사후처리와 관련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였는 바,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였다. 실제 우리가 접하는 미군의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도 미군의 환경 범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은 정부의 미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군산 미군 비행장의 하루 평균 105db의 소음과 일일 3천 톤의 오폐수, 평택의 일일 5천 톤의 폐수와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용산 미군기지의 독극물 방류, 송유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기름 사고 등과 매향리의 문제, 파주 스토리 사격장의 문제 등 전국 95개 미군 시설과 구역에 대한 원상 회복 등의 기회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개정에 환경 오염에 대한 복구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2년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격장의 경우 1km<sup>2</sup>를 복원하는데 16억\$가 소요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전국의 미군 시설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미군 주둔으로 인한 환경 오염 복구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이 철수한 92년(현재 다시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 준비를 하고 있음) 이후 지속적인 환경 문제로 지역 어린이들 100여명이 백혈병 등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용이 여전히 미국과 필리핀간의 외교 문제로 남아 있다.

셋째, 이번 개정된 SOFA는 ‘한국 정부가 미군 시설 주변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하여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의 현재의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군이 말하는 기지 밖의 환경오염의 경우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미군은 미군 시

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몰수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동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군시설 주변은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주거지역이 가장 많으며, 농업과 어업 행위가 그 다음이다. 이들로부터 토지를 싼 가격에 또는 무상으로 점유한 상태에서 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적대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며, 함께 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미군의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시설과 구역에 대한 이번 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여지 반환, 공여지 용도 변경, 공여지 침해 제거 및 공여지 내 시설 건축 시 우리 정부와 협의 규정 마련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한국 정부는 미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토지 수매 등을 통하여 미군에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현재 진행 중인 파주 스토리 사격장의 경우가 적용된다.

미군이 스토리 사격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이 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공탁 등의 형식으로 강제 수매하여 미군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위를 포함한 의사 표현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통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를 공여지 침해 방지라는 형식으로 이번에 합의되었다.

다섯째, 이번 협상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관점 중 하나는 외교통상부의 환경 조항에 대한 의견이다. 외교통상부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이러한 협조는 우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금법 환경 조항의 신설로 우리측이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과 이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아울러, 주한미군을 위해 일반적인 환경 기준보다 더 많은 보호를 하거나, 반대로 주한미군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미군 기지와 다른 지역을 차별하겠다는 내용이 아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번 협상에 참여한 미국의 입장에서든 똑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협상은 기존의 주둔군 지위 협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 환경 조항의 신설로 미국과 미군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군 시설과 구역은 다른 지역의 국내 지역에 비하여 심각하게 환경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최소한 미군의 시설과 구역이 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한국의 기업이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은 정부의 오관을 명확히 지적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4. 문제의 해결책과 대안

결국 여전히 불평등하고 미군 시설과 미군에 대하여 부단히 특혜를 주고 있는 개정된 SOFA로는 우리의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평가를 차지하더라도, 미군의 환경 범죄 행위에 대한 의무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며, 미군의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미군의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실제 SOFA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하여 잃은 것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국민은 미국과 미군에 비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역 차별 받고 있으며, 이는 환경과 인권 그리고 노동 등 모든 부분에서 명확한 사실이다.

결국, 이번에 개정된 SOFA로는 미군에 의한 환경 오염 사고와 환경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없으며 오염된 환경을 복원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당연히 국민에 의하여 거부되어야 한다.

#### 5. 90년대 이후 발생한 미군 기지 환경 문제

90년대 이후 한국 내 미군기지 환경 오염 피해 사례는 아래와 같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산적한 환경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SOFA가 전국에 95여 개의 미군 기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문제로부터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는 이번 개정안이 개정인지 개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에도 진행중인 미군 기지 환경 오염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90년대 이후 한국 내 미군 기지 환경 오염 피해 사례(알려진 것을 중심으로)

##### 1) 1990년 7월 6일 대전 대청호 기름 유출 사건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주한 미8군 대전 송유소에서 흘러나온 폐유가 대청호로 유입돼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킨 사실이 밝혀짐. 폐유가 유출된 미군 송유소 현장과 대청호 추동 취수탑과의 거리가 2km 밖에 안 돼 식수원 오염 문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청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대전시를 비롯, 대전 지방 환경청, 한국 수자원 공사 등 관계 당국은 송유소 이전 및 취수탑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채 수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대전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음.

##### 2) 1991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곡천 기름 오염

1991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곡천과 이 일대 논과 밭 1만여 평에 불순물이 섞인 경유가 흘러들어 농작물이 죽는 등 주민 피해가 커 그 동안 모두 16 차례에 걸친 기름 유출 진원지 조사 작업을 벌였으나 실패. 그러던 중 1997년 하남~광주간 43번 국도 확장공사에 따라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도중 오염지 인근 미군부대 절개지에서 다량의 기름이 배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 하남시에서 미군 쪽에 합동 조사 요구했지만 미군측 거부.

##### 3) 1994년 2월 24일 캠프 이글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에 폐유 방류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의관리 소재 미군 부대에서 폐유를 유출, 원주시 상수원 보호 구역인 섬강 상류로 유입됨. 오전 9시40분께 원주-횡성 간 국도변에 있는 미군 부대인 캠프 이글에서 폐유 4백여 l를 부대 하수구를 통해 원주시 상수원 보호 구역인 섬강 상류로 유출. 섬강으로 유입된 폐유는 미군 부대 변압기 폐유로 관계자 부주의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짐.

##### 4) 1996년 9월 18일 미군 송유관 파열로 한강 기름오염

1996년 9월 18일 오후 4시 27분쯤 서울 광진구 잠실대교와 천호대교 북단 사이 강북 강변 도로 옆 제방 밑을 지나는 직경 2백50 mm의 미군 전용 송유관이 파열돼 2천6백 리터의 경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유출된 기름 가운데 일부는 독 아래 배수로를 타고 한강으로 흘러 들어감

**5) 1997년 3월 4일 평택 캠프 COLBERH 기름유출 사건**

미8군 304통신대 부대 옆 하수도 공사 굴착 단면 70M 구간에 걸쳐 기름이 유출되었음. 부대 내 유류 저장 탱크 등에서 유출되었다고 보고됨.

**6) 1997년 5월 열화우라늄탄 폭파 처리**

경기도 포천군에서 핵무기·화학무기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로 UN에서 규정한 열화우라늄탄을 안전 장치 없이 일반 포탄 처리장에서 폭파 처리한 사건

**7) 1997년 8월 25일 평택 캠프 HUMPHREYS 부대(K-6)에 의한 환경 피해**

미군 부대 복지관 건축 공사중 파일 작업을 하면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근 주택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8) 1998년 2월 13일 동두천 캠프 KC 부대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미2사단 산하 부대에서 7년 간 수십만 톤의 건축 폐기물 산에 불법 매립하였으며 이후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9) 1998년 3월 7일 백운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개발 제한 구역인 백운산 정상에 있는 미8군 메디슨 기지에서 부대용 난방과 취사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유류 저장 탱크의 낡은 배관에서 기름 약 767ℓ의 경유가 유출. 미군 측은 사고 발생 후에도 외부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두 달 동안 기름 제거 작업을 함.

**10) 1998년 8월 9일 평택 캠프 HUMPHREYS 부대(K-6) 기름 유출 사건**

평택 K-6 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함. 집중 호우시 K-6부대의 지하 저장 탱크가 침수되어 보일러실에서 디젤 유(탱크용 550 갤런)가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 약 5천여 평 피해가 발생함.

**11) 1999년 5월 8일 평택 캠프 HUMPHREYS 부대(K-6) 특정 폐기물 매립 사건**

K-6 부대 내 특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300여 톤을 매립 및 침출수 발생한 사건이 발생함

**12) 1999년 9월 27일 부산 하야리아 부대 기름 유출 사건**

부산 하야리아 부대 보일러실의 기름 배관에서 정유로 보이는 유류가 하수구를

통해 일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함

**13) 2000년 1월 7일 평택 송탄 미군 기지 항공유 유출**

송탄 K-55 미 공군 부대 항공유 저장소에서 항공유 400리터 유출. 자체 조사 결과 항공유 송유관에 이상이 발생해 항공유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 미군은 그러나 이같은 기름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13일 기름 유출 사실을 평택시에 알림.

**14) 2000년 2월 14일 대구 미군 기름 수송용 송유관 파열 기름 유출**

대구시 서구 비산7동 팔달교 밑 금호강 둔치 지하 4m 지점에 매설된 미군 기름 수송용 지름 25cm 짜리 송유관이 파열로 기름 1만 리터 유출. 유출된 기름 중 회수되지 못한 상당량이 둔치 일대에 스며든 것으로 추정돼 인근 토양 오염과 금호강으로의 유입 우려. 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 송유관 공사는 송유관 응급 보강 공사 뒤 발전기와 양수 펌프 등을 동원해 기름 회수 작업을 벌였으나 사고 사실을 관할 서구청과 대구 지방 환경 관리청에는 통보하지 않았음.

**15) 2000년 6월 20일 미 공군 부대 제초제 살포에 의한 환경 오염(제8 전투 비행단)**

군산에 위치한 미 공군 제8 전투 비행단 예하 부대에서 제초제를 살포하여 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강우시 농경지로 유입되어 3.4ha총 1만여 평 18 농가의 논에 벼가 말라죽거나 생육 부진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16) 2000년 7월 13일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발표**

**17) 2000년 7월 22일 경기도 오산 미7공군 기지 연료 탱크 침수, 기름 유출**  
경기도 오산 미7공군 기지에서 JP-8 연료(옥탄가가 높은 고질의 항공유) 약 3천 7백갤런(70드럼)이 하천으로 유출. 미군은 기지 내에 있는 지하 연료 저장 탱크 2개가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18) 2000년 8월 28일 파주 미군 부대 연료 탱크 송유관 파손, 경유 유출**  
경기도 파주시 주한미군 2사단 공병 여단(일명 캠프 하우스)에서 연료 탱크 송유관 파손으로 경유 2000여ℓ가 유출돼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감. 경유는 이날 오후 부대 내 수영장 보일러실 오른편 5m 지하에 묻혀 있는 건물 난방 용 유류 저

장 탱크에 연결된 송유관이 집중 호우에 따른 지반 침하로 파손되면서 유출.

#### 19) 2000년 9월 25일 캠프 이글(Eagle) 상수원 기름 유출 및 토양 오염 사고 방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소재 미군 기지 캠프 EAGLE(부대장 Mr. Tuggle)에서 1991년부터 10년 동안 주유 시 새 나온 항공유 찌꺼기를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남한강의 지류(한강으로 유입)면서 상수원인 섬강으로 흘러보낸 사실이 '녹색연합'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21만 여 원주시민의 상수원인 섬강이 유류 오염에 10년간 노출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오염에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지 일대가 기름 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하게 드러났다.

#### 20) 2000년 11월 22일 대구 캠프 워커 항공유 유출 사건

대구시 남구 봉덕동 캠프 워커내 난방용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 제거 작업을 벌였다. 최근에 있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작업 후 흠을 제대로 다져 놓지 않아 지하 약 30cm 정도 깊이에 묻혀 있는 길이 4.5m의 기름 파이프가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파손되었다. 미군 측은 유출된 기름은 다목적 항공유로 약 4천 갤런 가량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1천9백여 갤런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오염 사안>

- 미 공군 제8 전투 비행단 예하 부대의 일일 3천 톤 오페수 무단 방류
- 미 공군 제8 전투 비행단 예하 부대의 소음 피해 발생
- 대구 A-3 비행장의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문제 심각
- 춘천 캠프 페이지의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
- 평택 송탄 K-55 비행단 일일 5천 톤 오페수 방류
- 평택 송탄 K-55 비행단 소음 피해 발생

#### 발제4

## 개정 노무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이소희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사무차장

### 1. 머리말

한미 SOFA는 주둔군의 주권 면제 특권 및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국내법의 적용에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군 부대에 종사하는 한인 노동자들의 경우 국내 노동관계법령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1999년 현재 주한미군 내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총 10,261명에 이른 다.<sup>2)</sup> 일반적으로 이들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과거의 얘기일 뿐이다. 1994년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사무직은 6.2%, 기능직은 6.9%로 평균 6.6%의 임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3년 12월 기준으로 한국노총이 산출한 3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 1,058,737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575,052원으로(하위직 직원 기준) 이들이 얼마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sup>3)</sup> 또한 근래 들어 주한미군 측의 예산절감을 이유로 한 인력감축정책 등으로 꾸준한 감원이 진행돼 왔으며 무분별한 하청, 미군가족의 불법 취업 등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듯 이들의 노동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용주가 내국인이 아닌 주한미군이라는데 있고, 무엇보다 이들의 근로조건이 한미 SOFA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SOFA의 불평등성은 고스란히 노사관계 및 근로조건에 불평등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SOFA 개정협상에서 노무조항이 개정된 것

2) USFK Resource Mangement Fact Book, 1999

3) 1995년 「노동법률」 4월호



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종래의 불평등 요소의 근본적 해결 없이 상징적 수준에서의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2. 노무 조항에 관한 개정 내용

이번에 타결된 노무조항의 개정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sup>4)</sup>

### 1) 국내 노동법 적용 관계 명확화

- 국내 노동법 적용의 예외조건으로 활동되는 동시에 한국인 근로자의 해고 근거가 되어온 '군사상 필요' 개념을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군대임무 변경, 병력감축 등 주한미군 방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하고 그 적용을 엄격히 함

### 2) 노동 쟁의 조정 절차 보완

- 노동위원회의 조정 후 미해결 시 합동위원회 회부  
-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시부터 45일간으로 단축

### 3) 해고 요건 강화

- 군사상 필요시 '임의 해고' 조항을 '해고 제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미 측에게 해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 4) 부당 해고 등 개별 분쟁 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보완

- 한국 정부의 특별위원회 회부 요청 시 주한미군 측이 이에 신속히 응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신설  
-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 또는 '적정한 절차의 거부'가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 또는 '적정한 절차의 미준수'로 하여 특별위원회 회부 요건 완화

### 5) 특별 양해각서<sup>5)</sup> 체결

- 주한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독점적 고용보장' 및 '주한미군 내 한국인 채용 보직의 미국인 채용 보직으로의 변경 금지'를 명문화  
- 주한미군 및 미군속 가족들에 대해 SOFA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출입국 관리법 상 외국인 취업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국내 취업을 전면 허용.

4)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함.

5) 정식 명칭은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 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그리고 기타 합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사 규정(USFK reg. 690-1)을 2001년 12월 말까지 한국 노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
- 부당 해고 등 개별 분쟁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SOFA 양해사항에 의한 개별 분쟁 해결 절차로서의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임의조정, 중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를 협의해 구성

아래에서는 위의 개정내용과 합의사항을 포함해 노무조항 전반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다루기로 한다.

## 3. 현행 노무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1) 직접 고용제

노무조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방식에서 주둔군이 현지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 고용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로 되며, 주둔군의 주권면제특권과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국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현지 정부 혹은 그 대리인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간접고용제의 경우에는 한국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되며, 따라서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현재 간접 고용제를 택하고 있는 예로는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이슬랜드 등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간접고용제로 전환 시 한국정부의 비용 부담 증대를 이유로 직접 고용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직접 고용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둔국인 미국이, 자국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간접 고용제에서는 사용자인 한국정부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칙적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부담 실태를 말하고 있다.

1991년 SOFA 1차 개정시 별도로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지원 협정'<sup>6)</sup>에서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을 위한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SOFA 제5조에서 시설과 구역의 공여권 이외에 어떠한 경비도 한국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내용과 전면 배치된다. 1999년 현재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 총액은 3,117억원으로 이중 한국 정부가 2,120억원(69%)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sup>7)</sup> 이런 상황에서 경비 부담을 이유로 간접 고용제 전환을 꺼리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 2) 대한민국 노동 법령의 적용

### (1) 관련 조항

현행 SOFA에 의하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근로 조건, 보상 및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노동 법령<sup>8)</sup>(이하 노동법)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본 협정 제17조 제3항)

여기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 조건, 보상, 노사 관계가 이 조항 또는 합의의사록 제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양해사항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이렇듯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보상 및 노동 관계는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법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국내 노동법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있다. 그것은 본 협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아래와

6)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으로 1991년 1월 25일 처음 체결되었다. 91년 1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중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1/3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대략 3년마다 후속협정을 맺고있다.

7) 이시영, 한태준 공동집필,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및 평가', 「국방저널」 통권 제323호, 2000년 11월. 한편, 주한미군측은 "현재 양국의 방위비 부담 협정 하에서도, 일본은 주일 미군의 비세출 자금기관(클럽, 구내 매점 등)을 포함한 일본인 고용인들에 대한 비용을 거의 100% 지불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주한 미군의 세출 자금기관 한국인 고용인들에 대한 비용의 70%만 지불하고 있다."며 직접 고용제의 경제적 이득을 내세운 바 있다. (미 합중국 SOFA간사 로버트 티. 마운츠, 주한 미군 법무 참모 울드릭 엘. 휘오리 2세 대령, '주둔군 지위 협정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가?', 2000. 4. 10)

8) 이 때 '노동법령'이라 함은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직업안정법, 대한민국이 가입한 노동관계 국제조약, 협약 등 일체의 등 고용주와 고용원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말한다.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1988.9.)

같은 단서 조항들에 의한다.

우선 동 협정 합의의사록에서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법 관계 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한 것은 국내 노동법령의 적용문제를 두고 미국정부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구실로 되어 왔다. 이는 주둔국 정부의 주권면제특권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국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노동위원회 등)의 사법적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 때문에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합의의사록 제17조 제4항)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의 회부가 비상 사태 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부하지 않아도 된다'(양해사항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4항)

고 규정함으로써 군사상 필요시 합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고, 그나마도 비상 사태 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에는 합동위 회부 없이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국내 노동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비상사태'나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가 무엇인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무엇보다 판단주체가 미국정부 일방에 주어진 만큼 미국 측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많다.

### (2) 실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관계 및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SOFA 노무 조항, 국내 노동법, 주한미군 인사 규정(이하 인사 규정)<sup>9)</sup>, 단체 협약<sup>10)</sup>을 들 수 있다.

9) 정식 명칭은 '주한미군 규정 690-1 한국인 직원 인사규정 및 절차' (USFK Regulation No. 690-1 Civilian Personnel Regulations and Procedures - Korean Nationals) 이다. 주한미군 내부 규정의 성격을 띠며 이러한 인사규정 외에도 차량 및 교통관리, 입출입에 관한 사항,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부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주체별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있어 부대 내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10) 주한미군 내 노사 당사자인 주한미군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 1967년 2월 25일 제정되어 가장 최근에는 1998년도에 개정을 한 바 있다.

국내 노동법 상 각 규범의 적용에서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노동법—SOFA 노무조항—단체협약—인사규정의 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제반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이며, 그 중에서도 인사규정이 미군 부대 내에선 하나의 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SOFA 본 협정에 의하면 이들 규범이 노동법상 제 규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들 규범은 국내 노동법에 훨씬 못 미치는, 전근대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어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국내 노동법에 의하면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상위규범인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은 자동 무효로 되며, 규범간의 상하에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노동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내 노동법은 아무런 힘도 갖고있지 못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경우 국내 노동법 상 취업규칙(회사 내규)에 준하는 것으로 직원의 고용, 재해보상, 근무시간, 휴가, 급여, 징계 등 제반 근로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내 노동법과 크게 상충하는 지점이 많아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주미노조)에서는 지난 SOFA 개정협상시 인사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현행 인사규정의 한국 노동법과의 불일치 내용에 관해 전달한 바 있다. (별첨 참조)

여기에 거론되지 않는 내용 중에도 무수히 많은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다. 단적인 예로, 해고를 포함한 직원의 징계 시 표준 벌점표를 일반적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반사항에 대해 발생 시마다(1차, 2차, 3차) 해당 벌점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반사항에는 '고분고분하지 않음' (명령복종 거절, 건방짐, 유사한 위반사항)<sup>11)</sup> 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 경우 1차 위반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남용 가능성이 많다.<sup>12)</sup>

11) USFK Reg 690-1, APPENDIX E, Table of Standard Penalties 17. Insubordination (refusal to obey orders, impertinence, like offense)

12) 2000년 5월 25일 부산 하야리아 부대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김모씨에 대한 소청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측인 미군측 대리인으로 나온 Mr. Paker는 그의 종결발언에서 "지난 4월 미스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었다. 검토 결과 미스 김이 매우 지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스김의 인간적 특징이 이와같은 일을 하기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미스 김은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았다. 오늘 봐도 성격적으로 성내고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스 김은 고객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제대로 대

다음으로, 단체협약의 경우에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동 협약에서는 노사협의 또는 협상사항으로 정작 포함되어야 할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아예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SOFA 개정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인사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기로 합의하고, 관행상 노사협의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나 과연 노동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한, 임금인상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반드시 노조와의 합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의 공무시간 사용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노조위원장만 노조활동에 100%의 공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60%, 분회장은 25%에 그치고 있어 노조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노조 활동가 전체에서 유일하게 노조위원장만이 노조전임자인 셈인데, 이에 관해 주미노조에서는 인사규정과 더불어 그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제한을 가하여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가 사법적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sup>13)</sup>에도 불구하고 관련 SOFA 조항을 들어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권마저 부정하며 한국 사법기관의 결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sup>14)</sup>

접하지 않았다. 그러한 개인적 특성이 미스 김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데 적합치 않다는 추가적인 근거로 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13) 대법원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1. 국제 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2.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1998. 12. 17. 선고 97다 39216 전원합의체판결)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제한을 가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가 사법적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 장주영, '노무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이장희, 장주영, 최승환 공저, 2000. 7. 1.)

14) 주한미군과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있던 미국기업 엠코에 시급제로 근무하던 우종용씨 등 24명은 지난 1990년 서울 민사지법에 주휴, 월차 시간 외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엠코 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원심이 유지되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을 인정, 1994년 5월 24일 주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주한미군내의 어떠한 쟁의도 한국기관의 관할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SOFA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따라서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정부측에 통고했다. (1995년 「노동법률」 4월호) 또한, 주한

### (3) 개정 결과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양국정부는 이번 개정협상에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근로조건, 보상, 노사관계가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해 정하여지는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위원회에 동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양해사항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제2항)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합동위 회부의 경우 강제규정이 아닌 단지 '회부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데다 설사 합동위로 문제가 회부된다 하더라도 합동위 자체가 갖는 한계성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의 예처럼 검토 결과 국내 노동법에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따른 이행절차나 세부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고있다.

군사적 필요 또는 비상 사태 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 국내 노동법을 이탈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간접 고용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근로 조건, 노사 관계 등은 양국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일본 법령에 따라야 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은 직접 고용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나 독일정부는 미국정부와의 합의를 거쳐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이나 사회보험에 관해 발생한 분쟁은 독일의 재판권에 속하며 고용주에 대한 소송은 독일정부에 제기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sup>15)</sup> 주둔 미군 부대 내에 근무하는 자국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어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후술할 해고 노동자의 구제방안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군 교역처(AAFES)에서 일하던 최만영씨의 경우 주한미군측에서 의뢰한 관세법 위반, 절도 혐의에 대해 한국세관 및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999년 7월 27일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동년 12월 15일 열린 소청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세관 관계자가 피해자측 증인으로 나와 무혐의 사실에 대한 증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미군측에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증인이 모종의 스캔들로 해고되었다는데 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음해하는가 하면 "한국은 어지간한 사건은 다 무혐의 처리를 한다"며 한국정부의 결정을 일축했다.

15) 독일보충협정 제56조 5항, 8항

### (4) 개정방향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간접 고용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독일과 같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라도 한-미 당국의 합의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고, 적어도 개별적 분쟁사례에 대한 한국 사법기관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결과를 존중하도록 관계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비상 사태 시 한미 합동위원회의 사전 검토 없이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이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득이하게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미 합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되 동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세 번째, 실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노사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주한미군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을 국내 노동법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종사 노동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

개정 전 합의의사록에서는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이러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군사상 필요'란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해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해사항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제3항)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상 필요'의 의미가 여전히 모호하면서 국내 노동법 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군사적 필요'라는 일방의 판단에 의해 어느 때고 해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동 조항의 개정이 주되게 요구되었던 바, '군사적 필요'라는 의미를 상술한 바와 같이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미국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군의 임무변경이나 자원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제한하고(양해사항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제3항),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고용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사상 필요로 인하여 감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가

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합의의사록 제 17조 제2항)고 개정하여 해고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군사상 필요’라는 개념은 여전히 그 판단의 주체가 미국정부 일방에 주어지고, 남용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국내 노동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에 의한 임의해고를 가능케 하는 상기내용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6)</sup>

#### 4) 부당 해고 등 개별 분쟁사건에 대한 구제방안

한미 SOFA에서는 부당 해고 등 개별 분쟁사건에 대한 구제방안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다만, 양해사항 제17조 제4항 (가)(2) 2.(가)에서 대한민국 노동부는 개인 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최종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 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 (1)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졌고,
- (2) 해당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며, 그리고,
- (3)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합중국 군대는 노동부의 회부 요청에 대하여 적시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에서 (3)항 이하는 금번 SOFA 개정협상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종전에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 또는 ‘적정한 행정절차의 거부’가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 또는 ‘적정한 행정 절차의 미준수’로 하여 특별위원회 회부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그동안 한국 노동부에서 미군 측에 특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미군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특별위원회 성립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을 노동부의 회부 요청이 있으면

16) 주미노조에서는 ‘해당 내용이 그동안 무분별한 해고의 빌미가 되어왔던 만큼 이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나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주한미군노동조합 SOFA 개정 요청안’, 2000. 11. 20. Peter Newman과 강인식 위원장과의 SOFA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미군당국이 적시에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설사 특별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한미 동수로 구성되며, 결정에 있어서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투표에서 가부가 동수가 될 경우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가 심의와 투표를 계속하도록 되어있어 어떠한 결론 없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sup>17)</sup> 더구나 특별위원회 결정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특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sup>18)</sup>

이렇듯 금번 개정을 통해 부당 해고 등 개별 분쟁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노동자의 해고에 대해 접수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해고 무효 판결이 난 때에는 미군 측에 이를 통보하고 만일 미군 측이 접수국 당국의 결정에 따라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킬 것을 거부한 때에는 미군 측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군당국은 해당 법원(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수리한 후 일본의 경우 1주일, 독일의 경우 2주일 이내에 관계인에 대한 고용 지속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하여 사안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신설될 경우 미군 측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적어도 개별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회부보다는 일본이나 독일의 예처럼 한국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판결내용을 미군 측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9)</sup> 이는 지난 개정협상에서 개별 분쟁 해결 절차로서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임의조정, 중재절차를 협의해 구성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17) 실제로 지금까지 노동부가 미군측에 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사례는 4-5건에 불과하고 그 중 부당해고에 관한 단 1건만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그나마도 2년에 걸쳐 9차에 이르는 추가 심의와 투표를 계속한 끝에 결국 패소하고 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 이를 위해 한미 행정협정 특별위원회 운영절차에서는 4. 사안회부 절차에서 (5) 종업원이 서명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재론될 수 없는 최종 결정으로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5) 노동 쟁의

### (1) 개정 내용

개정 전 협정에 의하면 쟁의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정절차<sup>20)</sup>를 밟도록 하고있다. (본 협정 제17조 제4항 (가))

① 한국 노동부의 알선.

② 합동위원회에 회부.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제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한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③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증 하에 쟁의를 해결. 여기서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④ 또는 고용원이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또는 해결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여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위 단체의 승인 철회 및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⑤ 고용원은 쟁의가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정상적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해도 종사할 수 없다.

그러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상기 ①항에서 한국 노동부의 알선<sup>21)</sup>을 거치도록 하는 대신에 국내 노동법 상 노동위원회의 노동 쟁의 조정<sup>22)</sup>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양해사항 제17조 제4항 (가)(1))

① 노동위원회는 각각의 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쟁의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조정위원 명단에서 교대로 이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3인의 위원을 선정한다.

④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⑤ 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을 추가로 15일간 연장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⑥ 조정절차의 세부사항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바에 의한다.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개정 전엔 행정관청에 노동쟁의의 신고, 알선, 조정, 중재의 순서를 거쳐야 했으나 97년 개정 후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 중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21) 알선(斡旋): 노사 쌍방이나 어느 한편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노동위원회가 지명한 알선위원이 노사의 중간에서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알선위원이 해결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22) 조정(調停): 노사를 대표하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⑦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권고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⑧ 조정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기 조정절차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협정 제17조 4. (나))

그리고, 냉각기간을 종전 70일 +  $\alpha$ (노동부 조정기간) 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5일로 단축하였다.<sup>23)</sup> (양해사항 제17조 제4항 (가) (5))

### (2) 문제점

우선 조정절차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최장 30일)에서도 미타결시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알선'한 뒤 양국 간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중재)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첫째로, 노동위 조정에서도 미타결시 '자동으로' 합동위원회의 중재<sup>24)</sup>를 받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절차상 강제중재<sup>25)</sup>에 해당한다. 중재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 원칙과는 가장 거리가 먼 강제적인 해결방법이기 때문에 임의중재<sup>26)</sup>가 원칙이고, 강제중재는 공익사업<sup>27)</sup> 중에서도 필수공익사업<sup>28)</sup>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사실상 쟁의행위는 불가능하게 된다.

23) 여기서 SOFA 본 협정에 냉각기간을 70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하위문서인 양해사항만 바꾼 것은 개정내용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양해사항은 본협정과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 외교부와 미국방부·국무부의 공통된 견해라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24) 중재(仲裁):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이에 개입하여 중재의 판정을 내려 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25)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실패한 경우 강제로 중재가 개시될 수 있다.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강제중재의 대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가, 조정(調整)전치주의에 의해 조정(調停)을 신청하여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강제중재 회부되어 또 다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면서, 그 금지기간동안에 중재재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노사당사자는 중재재정에 구속되고 중재재정에 의해 노동쟁의가 해결되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다.

26) 중재에 붙이는 것이 임의, 즉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신청을 하거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개시되는 중재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1·2호)

27) "공익사업"이라 함은 ① (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②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28)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① 공익사업으로서, ② (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i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ii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③ 그 업무의 대체가 용

두 번째로, 합동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해결절차의 진행 중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상기 본협정 제17조 제4항 (가)(4)에 의거, 노동조합의 승인 철회 및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만큼 합동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SOFA에서 합동위원회는 한국정부대표 1인과 미국정부대표 1인으로 구성되며, (본 협정 제28조 제2항) 특별위원회는 한국정부와 미군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양해사항 제17조 제4항 (가)(2) 2.(다)) 정작 당사자 일방인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아예 막혀있다. 거기에다 각 위원회는 한미간에 각기 동수로 구성되며, 특별위원회의 경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국내 노동법 상 노동위원회의 중재제정<sup>29)</sup>이 위법이거나 월권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합동위원회의 결정(중재)에 대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냉각기간은 수치로만 보자면(70일+ $\alpha$ 에서 45일) 예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 노동법 상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될 수 있는 최장기간(조정 15일+조정 연장 15일+중재 회부 시 15일)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에 속한다. 또한, 한국 내 노동조합운동의 관행상 45일의 냉각기간을 둔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중재가 성사가 안되어 쟁의행위에 돌입하려 하더라도 상기 본 협정 제17조 4. (나)에 의하면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못하게 되어있어 냉각기간 단축이라는 것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sup>30)</sup>

### (3) 개정방향

· 국내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공익사업에 준하는 정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하지 아니한 ④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함) 운송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29) 중재위원회가 내리는 판단. 확정된 중재제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규범적 효력 등)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2항)

30)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미군 부대 내에 있는 미군속이나 한국 군부대의 군무원의 경우 쟁의행위가 아예 봉쇄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 노동위원회의 조정 실패 시 강제로 합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되도록 한 것을 ①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로 한정한다.

둘째, 본 협정 제17조 4. (나)에서 조정절차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가지되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셋째, 냉각기간을 최소한 45일로 못박아놓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합동위원회에 중재 회부시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한다. 이러한 경우 중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최소 15일, 최장 30일(조정기간 연장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넷째, 합동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한미 정부대표와 동수의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단, 국내 노동법 상 중재위원회는 노사 당사자가 아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로 구성되는 점에 근거하여 합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중재를 위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다섯째, 합동위원회의 결정(중재)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6)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 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원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민간인 직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독점적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한국인 채용 보직에 미국인 가족을 채용하는 문제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되어왔다. 이에 주미노조에서도 그의 전면적인 금지를 수차례 요청해 왔으며 이번에 개정되게 된 것은 상당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군 및 미 군속의 가족이 SOFA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취업을 허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원인이 되고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노무조항은 지난 개정에서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다뤄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 많은 독소조항들로 인해 개정된 내용조차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고, 미군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제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미군 내부규정이라는 자체 속성에 의하여 그 내용이나 적용실태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단순히 SOFA 노무조항에 국한되어 그에 대한 입장과 재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나마 실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는 구체적인 규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 글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알려내고, SOFA 노무조항의 전면 재 개정을 이루어내는 것과 함께 당면하여 연내 주한미군 인사규정이 한국 노동법에 부합되게 개정되는데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주한미군 인사 규정 중 한국 노동법과 불일치하는 부분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구분	인사 규정	한국 노동법규
정리해고절차	Chapter4(Reduction-In-Force), Para 4-14 - 노조와의 Communication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은 정리해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60일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해고 회피 노력, 해고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해고 예고	Chapter4, Subpara4-30c - RIF의 통지는 상용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한다고 규정 - long-term temporaries(3년이상 기간제)에는 최소 14일 이전 - 기타 temporaries와 intermittent에게는 최소 7일전 ※Chapter10에서는 해고시 사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temporaries에 대해서는 7일 이전에 해고통지토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32조는 해고시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의무 - 단, 근로기준법 제35조는 2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3월 이내의 시용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채용후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재해 보상	Chapter5, Para 5-1, 5-5 - 업무상 부상·질병이 본인의 과실(misconduct)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 - 재해 발생시 48시간 이내에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 - 미노동부 재해보상국(OWCP)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연방직원보상법(FECA)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최종 결정시까지 180일 소요 허용	- 근로기준법 제84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 -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상신청하면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법 미적용
여성 근로자 보호	Chapter7, Para 7-7 - 출산휴가는 10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부여 - 출산휴가 및 이후 30일간 해고제한 규정 없음 - 육아휴직 규정 없음	- 근로기준법 제72조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적용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출산휴가 기간과 이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11조는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줄 수 있도록 규정
주휴일 근로수당	Chapter8, Para 8-7 - 공휴일근로수당(holidays premium)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일반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없음 - 주휴일의 유급 규정 없음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휴일근로시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4조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
퇴직금	Chapter8, Subpara 8-11b(2) - 단시간 근로자(part-time employees)에 대해서는 과거 1년이상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력이 있는 자로 지급이 제한되어 있음 ※part-time employees는 주당 32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5조는 단시간 근로자중 주당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퇴직금 규정을 적용 제외
금품 청산	Chapter8, Para 8-11c(4) - 절도, 물품 부당유출 연루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기 위해 퇴직금 지급 보류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토록 규정



#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이정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1. 서론

미군과 군속 및 그 가족, 초청 계약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절차는 크게 공무집행중의 행위와 공무집행과 무관한 행위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공무집행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집행과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금 사정통보에 이은 미군 측의 시혜적 위로금 지급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미군 등의 불법행위자 개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00년 말 SOFA개정협상에서 양해사항과 합동위 합의사항에서 적시된 민사청구권 실현과정의 개선사항은 이 중 공무집행과 무관한 행위에 대해 미군 개인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 개선사항의 내용 및 한계점에 관하여 논하고, 이 사항들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서 마땅히 SOFA개정 협상에서 다루어졌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본다.

## 2. 민사재판 절차에 관한 합동위 합의 사항의 개요

미군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점은 크게 ① 송달의 어려움, ② 미군의 출국에 대한 무대책<sup>31)</sup>, ③ 증거수집의 어려움, ④ 보전 절차

31) 주한미군 전용 택시기사인 정양환씨는 그에 의하여 폭행당하였다는 미군의 허위신고로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미군헌병대에 불법체포 감금되었다가 풀려나, 대한민국과 자신을 연행한 미군헌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미군헌병에 대하여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우편송달과 특별송달이 모두 송달불능되었다. 또한 미군헌병이 출국하였는지에 대한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한 사실조

및 집행의 사실상 불가능성에 있다. 최근 작성된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 합의 사항”은 이 문제점들에 대한 일정한 개선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법원은 연락 기관(미 법무감실)을 경유하여 또는 직접 송달 및 공시 송달을 통해 미군 등에게 소송 서류 등을 송달할 수 있으며, 미군 연락 기관은 송달 의뢰 청구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수령을 인정하고 수령한 서류를 수취인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수취인이 한국을 영구히 떠난 경우 연락기관은 이를 한국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미군 당국은 미군 등의 법정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미국 법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 제출 및 미군 시설 출입에 협조한다.

3) 미군 당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군 등의 봉급에 대하여는 미국법의 한도 내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많은 부분에서 독일 SOFA와 유사한 것으로, 일정한 개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 3. 합동위 합의 사항의 문제점

### 1) 합의의 형식 문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민사청구권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위 사항들이 SOFA에 삽입되지 못하고, 양해사항에서도 극히 추상적인 내용에 그치고,<sup>32)</sup> 합동위

회도 “특별송달불능지역”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집달관에 의한 유치송달도 경비원의 수령거절로 실패하여 1년 여 동안 재판서류의 송달거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결국 부대장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주한미군사령부 법무실에서 피고가 이미 출국하였다고 알려와, 법무부에 피고 미군들이 출국하였는지 사실조회한 결과 피고 미군헌병은 소송이 제기된 지 2달만에 출국해버렸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가 출국한 이후 이루어진 부대장에 대한 송달도 효력이 없게 되어, 결국 외국에서의 공시송달에 의하여야 하나, 미군들의 미국내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도, 국내판결을 미국에서 집행하는 방법도 없어 결국 미군에 대한 소송부분은 취하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만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지방법원 1995. 8. 9. 선고 94가단62404판결)

합의사항에서야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합동위 합의사항이란 언제라도 합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변경가능하고,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표현 그대로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위 내용을 독일보충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sup>33)</sup> 한 나라가 타국의 민사재판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어야 한다. 위 사항들이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된 것은, 2000년 SOFA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이러한 법률체계상의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 2) 보전처분에 대한 명시 없음

위 합의사항 4.(라)항에는 “합중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에게 지급할 금원은 압류 기타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보전절차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민사청구권의 행사에서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것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미군의 임금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4.(가)항<sup>34)</sup>을 적용하여 미군의 임금에 대하여도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3) 미군의 출국에 대한 무대책

위 합의사항 1. (다) (3)은 “송달 받을 자가 영구히 한국을 떠난 경우 연락기관은 지체 없이 대한민국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미군이 출국할 경우 원고로서는 그 출국사실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도 없으며, 출국해버리고 나면 국내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법원이 요청할

3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1.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민사재판권의 행사를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2. 청구절차를 담당하는 합중국과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한 경우 치료비 사전지급의 고려를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청구의 판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한다.

33)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둔중인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보충협정 제32조, 제34조, 제37조.

34)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행한 비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판결, 결정, 명령 및 화해조서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우 미군의 연락기관이 어느 정도의 원조를 제공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최소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출국한 미군의 미국 내 주소를 알려주도록 해야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합의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본다.

## 4)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행확보방법으로서의 인신 구금에 대한 제한

위 합의사항 4.(나)항 1문은 “미군 등이 비형사 절차에서 사법부 또는 행정부의 결정 또는 명령을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은 법정모욕으로 처벌하거나 위 결정 또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문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이 자유가 박탈되지 아니하는데, “공무수행중인지 여부에 대한 합중국 군 당국의 인증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청구권에 있어 공무집행중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SOFA 제26조 제8항, 제2항 (나)에 의하면 사법관계의 상급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인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다. 비형사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신을 구금하는 것으로는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구금은 본질적으로 민사절차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있어서 공무집행중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사재판권의 결정에 있어 공무집행중인지 여부의 판단이 양해사항(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미군장교의 공무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민사청구권의 실현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중재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제4문은 “대한민국 관할기관은 급박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러한 자유의 박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합중국 군 당국의 이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급박한 군사상의 필요도 아닌 급박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합중국 군 당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대한민국이 이 이의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도 일반적인 민사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

#### 4. SOFA 민사청구권 관련사항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

##### 1) 본 협정 제23조 제5항 (마)

본 협정 제23조 제5항 (마)는 공무집행중의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미군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만 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이 배상금 등의 25%를 부담하고, 그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미국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균등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권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는 최초에 NATO SOFA에서 규정되었는데, 미국이 협정체결 당시 유럽에 통화팽창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권의 비용이 격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접수국이 재정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분담규정을 삽입하였다고 한다.<sup>35)</sup>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배상심의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사건처리는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고 미군에 의한 불법행위 사건에서도 역시 동일하므로 손해배상금이 과다계상될 우려가 없다. 오히려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은 미국 법원이 적용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타국의 손해배상금보다 대부분 적으므로, 미국 법원에서 산정 되는 손해배상금보다 적은 경우가 상당하리라고 본다. 결국 미국은 미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서만 제기하도록 하는 SOFA 규정<sup>36)</sup>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위 조항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가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서, 최소한의 형평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도 미군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는 미군이 전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2) 청구권 포기조항

SOFA 제23조 1.에 따르면, 공무집행중의 행위 또는 공용차량 등의 사용으로 인

35) 외무부, "한미간교섭회의록"(제2권, 1966. 7.), 410쪽.

36) SOFA 제23조 제5항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며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하여 군대재산 또는 정부재산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 4.항에 의하면 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집행에 종사하고있었을 때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sup>37)</sup> 이 조항들은 상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호혜적 입장에서 규정되었을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군이 발생시킨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최종적 책임을 지므로,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청구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고의,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2.(바)에 따르면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1,400달러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 당사국이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특별한 근거 없이 소액의 배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사실 배상금이 1,400달러 이상인지 그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만 가능하다. 또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유사한 사실관계로부터 다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피해예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소액배상금에 대한 무조건적 청구권 포기 조항은 삭제되거나 적어도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양국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3) 피해자의 비용 부담 문제

2000년 말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13조 제2항은 "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례비·치료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바, 미군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중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지구심의회의 배상금사정 및 미군에 대한 통보, 다시금 미군에 의한 사정이 있어야만 배상금이 지급되므로, 긴급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폭행, 상해 등

37) 1996. 4. 23. 11:35경 경기도 동두천시 결산동 산 144(미군사격장 부근)에서, 미 2사단에서 소총 사격훈련 중 연막탄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였다.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이 이를 진화하다 화염에 질식되어, 사망 7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임야 4.5ha가 소실되었다. 미군은 당시 산불조심 강조기간 중에도 산불방지 사전대책 없이 사격, 연막탄 투여 등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군사훈련으로 인한 산불 발생 시 발화즉시 진화하여야 하나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진화를 위한 헬기, 병력지원도 용하지 않았다. 이 곳은 산간오지 지역으로서 소방차가 산불진화에 참여하지 못하여, 공익근무요원등이 2시간여 동안 진화작업으로 지친상태에서 개래식 장비를 갖추고 조직적인 진화훈련도 미흡한 채 진화작업 실시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 군대의 구성원이 이와 같이 피해를 입을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과 같은 불법행위사건을 제외하고라도, 빈발하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한국인에 의한 사고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한국인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가 따로 치료비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중대한 잘못이 없더라도 대인사고이건 대물사고이건 형사 입건되어 처벌되므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SOFA 개정협상 결과 분야별 해설"에 의하면 미군개인차량은 보험에 가입하나 미군 공용차량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공용차량이 비공무 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일 경우 그 운전자를 입건한다 하여도 사실상 적절한 형사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통상이므로, 결국 공용차량이 비공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사실상 치료비와 수리비를 피해자가 조달하여야 하는 형편이다. 또 미군개인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가 중대하여 그 한도액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치료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공로를 통행하는 미군차량과 미군이나 고용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sup>38)</sup> 그렇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치료비를 내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공무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군차량 중에서 작전용 차량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보험기간과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해사항에서는 치료비 사전 지급 등을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청구의 판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양측이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진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에 머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38) 독일보충협정에서는 미군 및 군속과 그 가족의 사유 차량과 항공기에 대해 보험에 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미-호주 SOFA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공용차량을 보험에 가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5항).

## 성명서

# 소파 협상 다시 하라!

—SOFA 계약 너무 많다! SOFA 협상 다시 하라!—

'SOFA 협상 결과'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회 운동 세력과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두 나라 정부 대표들이 마지못해 협상을 끝냈지만, 불평등 조항은 거의 그대로고, 오히려 몇 조항은 계약까지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나아진 게 있긴 하다. 일부나마 흉악범의 신병 인도 시기를 앞당겼다. 노동자들의 냉각기간도 조금 앞당겼다. 환경 조항도 신설했다. 그러나 그런 조항에 서조차 미국에게 준 게 너무 많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게 협상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의 요구를 눈꼽만치라도 들어주면, 그것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요구 가운데 상식에 맞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몇 부분만 살펴보자. 우선 발표문에 '죄질이 나쁜 강간'이라는 표현이 있다. 도대체 죄질이 좋은 강간도 있단 말인가? 검찰이 미군을 기소한 뒤에는 신문할 수 없고, 여전히 항소하지 못한단다. 매향리 미공군 국제 폭격장 폐쇄 투쟁 과정에서 김용한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 최용운 위원장, 김종일 매향리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구속됐을 때, 그들은 기소된 뒤에도 수감 차고 포승에 뽕뽕 묶인 것도 모자라,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검찰에 수시로 끌려나가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1심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받고 검찰한테 항소를 당해 2심을 기다리고 있다. 미군은 기소 후에 신문도 할 수 없고, 1심 후에 항소도 못한다니 정말 이래도 되는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교통사고를 내면 잘 해결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뿐인데, 앞으로 한국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환경 조항은 신설한다지만, 원상 복구나 배상 의무는 여전히 없다. 법률과 정치 사이쯤 된다는 '특별양해각서'에 '오염 제거' 항목을 두는 모양이지만, 미국은 '주요' 오염만 제거하면 된단다. 그나마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게다가 '우리측이 미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지 외부의 주요 오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단다. 한국인들은 환경 의식도 없는 미개한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미군이 오염된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호도하기 위해 미국 정부 대표들이 몰타기 술책을 부렸는데, 한국 대표들이 넘어간 것이다.

현재 불법으로 하는 주한미군 가족의 돈벌이도 이번에 아예 SOFA를 고쳐가며 합법으로 보장해 주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땅임자가 자기 땅에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개악 신설된 '공여지 침해 방지' 조항 때문이다. 미군 부대 안 골프장이나 도박장, 술집, 식당 같은 이른바 '비세출자금 기관' 조항은 합의문도 못 났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합의한다는데, 1년 동안 몇 천 억 원의 불법 이익을 챙겨갈지 눈에 선하다. 불법 수입이 얼마나 크면 이 조항만 합의하지 못했을까? "미국은 돈밖에 모른다"던 서 로베르또 신부님 말씀이 맴돌 뿐이다.

기지촌 여성과 혼혈 어린이 인권 보호 조항, SOFA의 유효기간, 통관이나 관세 등 특혜, SOFA의 모범인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은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곧바로 이 전체를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즉각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00년 12월 29일**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